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신성범·김종양·박정하

조은희 • 이만희 • 김승수

박대출 • 정희용 • 박준태

신동욱 • 유상범 • 조배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 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 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 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중 "제11조제2항"을 각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
	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u>ㅇ</u>
	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
	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
	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
	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u>②</u> ~ <u>⑤</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6}$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⑥</u>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5</u>	<u>⑦</u> <u>제6항</u>
<u>항제3호</u> 에 따른 봉인을 한 후	제3호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	
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	
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u>제5항제2호</u> 에 따른 게	<u>제6항제2호</u>

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